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03

발의연월일: 2025. 4. 1.

발 의 자: 손명수·문정복·김영배

이용선 • 문진석 • 남인순

김한규 · 민형배 · 한민수

윤종군 • 이연희 • 김원이

송기헌 • 박홍배 • 김태년

모경종 • 김남근 • 염태영

김영진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자격 시험일 또는 교육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와 달리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 기준일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처분 대상자의 주소변경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가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시험일 또는 교육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을 잃도록 하여운전면허 취소 후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취소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및 제23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중 "제23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를 "제23조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라 운전면허 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제1항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2조제3호 중 "제23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따른 취소는 제외한다)에"를 "제23조제1항에"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제7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조제1호"를 "제9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절차에"를 "절차와 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상실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로 한다.

②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효력을 잃는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결격사유) <u>다음 각 호의 어</u>	제9조(결격사유)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	
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	
을 취득할 수 없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3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	2. <u>제23조제1항에</u>
<u>다)에</u>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	
격이 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	
을 취득한 자가 제4조제1호에	
해당하여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	3.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u>
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운전면
에 따른 교육일 전 5년간 다	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나지 아니한 사람
하는 사람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4.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	4.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라 운
에 따른 교육일 전 3년간	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이 지나지 아니하 사란

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신 설>

- 제2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제23조제1항(같은 항 제7호 의 사유에 따른 취소는 제외 한다)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 자격의 취소

4. • 5. (생략)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있다. 다만, 제1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결격사유 해당 여
부는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2조(청문)
<u>.</u>
1. • 2. (현행과 같음)
3. <u>제23조제1항에</u>
4.•5. (현행과 같음)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
소) ①
, <u>মা6ই</u>
, <u>মা6ই</u>

- 제9조제1호에서 준용하는 제
 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게 된 경우
- 2. ~ 6. (생략)
-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

 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

 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의2. ~ 10.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
2. ~ 6. (현행과 같음)
<u><삭 제></u>

7의2. ~ 10. (현행과 같음)

②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화물자동차를 운전할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효력을 잃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절차와 화물운송종사자격 효력상실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